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24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5호(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안) 중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11일

국토교통부장관

관보내용	정정내용
「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」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4호)을 일부 개정고시하여 공포함	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4호 부칙 제4조 제2항(신설 조항) 중 "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1053호 「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」에 따를 수 있다."를 "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1053호 「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」을 따를 수 있다."로 정정하고자 함

※ 정정고시 사유 :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4호 부칙 제4조 제2항(신설 조항) 자구(조사) 오류사항 수정